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별표1) 품종구분기준 (2)의 제4항중 “3만원” 을 “10만원”
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